

1. 수업 목표

- WTO TRIPs협정의 목적과 보호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 강의 내용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 WTO TRIPs협정의 체결 배경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항이 GATT에 존재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고 지적재산권의 무역상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인류공동유산론’을 주장하며, 협정체결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적상품의 유통문제에 국한하게 하고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문제는 WIPO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후진국들은 GATT체제 하에서의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조건으로 선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1986년 9월 20일 위조상품 교역을 포함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각료선언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와 왜곡을 축소하고,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조치와 절차 자체가 적법한 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GATT 규정을 명료히 하고, 적절한 새로운 규칙과 룰을 정하고, 위조상품 규율에 관한 다자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7년여의 기나긴 협상 끝에 WTO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를 구성한 것이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은 지적재산권의 주요 협약 적용대상국 증가 현상을 가져올 수 있었고, WTO가 유지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보복 제도를 통하여 판정 결과의 이행을 강제하기가 용이하며, 그 동안 다른 지적재산권 조약에 결여되어 있었던 집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TRIPs협정 자체 내에 둬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매우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 알아보기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과 협력
-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 조화 도모
- 개도국에 대한 법제·기술면의 원조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
- 대중교육과 문화보급, 지식의 유지·증대
- 세계유산의 보호

나만의 강의 노트

## 더 알아보기

### □ 저작권

- 학술·문화·예술적 창작물 또는 저작물을 보호 객체로 하는 권리

###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권리 부여
-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 복제, 배포, 녹화, 중계방송

### □ 상표권(서비스표권)

- 물품의 식별표시 독점 권리
- 상품에 대한 이름은 상표권  
예> 운동화, 의류 등 (유형)
- 서비스업에 대한 이름은 서비스표권  
예> 병원, 음식점 등 (무형)

### □ 의장권

- 물건의 독창적 형상, 색채, 도안 등의 독점 적용

### □ 실용신안권

- 기존 물품을 개량한 실용적인 고안을 독점 이용

### □ 주지상표

- 특정인의 상품 표시하는 것
-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를 지칭함

## 2. 지적재산권의 정의

### (1) 개념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 TRIPs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정의하지 않고 제2부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의장권, 특허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을 지적재산권의 예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설치협약 제2조 8항에 따라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①문학·예술과 과학 작품, ②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③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과학적 발견, ⑤공업의장, ⑥등록상표·서비스 마크·상호 및 기타 명칭, ⑦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⑧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파생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조기술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새로운 문학·미술·문학작품의 저작과 새로운 연출·공연·제작 및 방송 등의 저작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 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나고 있다.

### (2) 종류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세 종류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 ①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최근까지 사용되어 왔던 공업소유권을 확대하여 개칭한 것으로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 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특허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 발명의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크게 물질특허, 제조특허 및 용어특허 등으로 구분된다. ‘의장권’은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그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며, ‘실용신안권’은 고안 등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에 주어지는 것으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상표권’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자, 도형, 기호 및 색채 등의 결합으로 표현된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말한다.

## 나만의 강의 노트

## ② 저작권

저작권은 크게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되고 있다. 저작권은 문학·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하며 저작재산권과 그 저작물의 공표, 성명표시, 동일성유지 등의 권리를 관할하는 저작인격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이용과 배포에 관련된 권리로서 녹음, 녹화, 방송, 재방송 및 위성방송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③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등장한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크게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저작권과 정보재산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산업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복합어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 기능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첨단산업저작권’은 첨단산업에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유전공학, 전자 및 정보산업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과거의 산업재산권에서 논의되던 것과는 구별되는 매우 다른 성질의 물질과 기술들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정보재산권’은 상품의 제조, 판매, 영업 및 기획 등의 분야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정보와 이의 전달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며, 영업비밀권(trade secret), 데이터 베이스권(data base) 및 신방송매체권(new media) 등이 여기에 속한다.

## 3. TRIPs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1) 일반원칙

#### ① 최저기준의 원칙

TRIPs협정 제1조 1항 2문은,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법을 통하여 이 협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TRIPs협정의 기본적 성격인 ‘최저기준(minimum standard)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TRIPs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는 회원국이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최저기준이며, 국가별 사정에 따른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TRIPs협정의 적용 유예시간이 인정될 뿐이다. ㉡각 회원국이 TRIPs협정에서 정한 보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각종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 예컨대, TRIPs협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 동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개별 회원국이 이를 70년간 보장한다든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예술작품의 거래에 있어서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 □ 추급권(追及權)

- 프랑스나 이태리 등의 예술 선진국에서 주로 이용
- 미술 저작품의 판매시 판매차익의 일정 액수를 원저작자에게 지불할 것을 강제

## 나만의 강의 노트

## 더 알아보기

### □ 파리협정

- 산업재산권의 보호

### □ 베른협정

-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

### □ 로마협정

- 실연자·음악제작자·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나만의 강의 노트

### ② 내국민대우의 원칙

각 회원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더 낮지 아니한 수준의 대우를 다른 국민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3조). 반면 TRIPs협정은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로 첫째,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파리협정, 베른협정, 로마협정 및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정(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IPIC)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둘째, 송달을 위한 주소의 지정 또는 대리인의 선임을 포함한 사법 및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두는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고, 셋째, IPIC 등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주관 하에 체결되는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는 내국민대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최혜국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TRIPs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로 첫째, 일방 회원국이 부여하는 이익, 혜택, 특권, 면제가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성격의 법률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 둘째,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아닌 상호주의원칙을 채택한 로마협정 또는 베른협정에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셋째, 공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권리로 TRIPs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넷째, WTO 설립협정 시행 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 규정은 WIPO 주관 하에 체결되는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서 규정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조).

### (2) 다른 협정의 준용(국제협정 플러스 방식)

TRIPs협정 제2조는 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존 협정간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먼저 1항은 TRIPs협정의 원칙 중 하나로, 파리협정을 기본으로 새로운 의무사항을 추가한다는 이른바 ‘파리협정 플러스 어프로치’에 관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파리협정의 분쟁해결절차가 강제력이 없으므로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제적 규정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로 반영된 것이 본 조항이다. 이로 인해 파리협정 비가입국도 파리협정을 위반할 경우 WTO 분쟁해결기관에 제소되어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항은 본 협정의 제1부 내지 제4부의 규정이 파리협정, 베른협정, 로마협정,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 회원국이 이들 협정 하에 지는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TRIPs는 파리협정 플러스 방식 외에도, 저작권에 대하여는 베른협정 플러스 방식, 반도체회로의 배치설계권에 대해서는 IPIC 플러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3) 권리소진 - 미합의 내용의 협정적용 배제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원권리자가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특허물품 포함)을 일단 판매하면 이를 매수한 복제본의 권리자는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제1의 판매로써(특허권, 저작권 등의) 원권리자의 권리는 소진 된다는 것이다.

#### ① 병행수입

병행수입이란 권리자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복제된 특허상품, 저작물, 상표부착물이 권리자의 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 선진국은 병행수입 금지, 개도국은 인정

#### ② TRIPs의 규정

TRIPs 제6조에서는 “본 협정상의 어떤 것도 지적재산권의 소진문제에 관한 본 협정하의 분쟁해결절차를 다루기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각 체약국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권리소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와 제14조 제4항에서 일정한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에 대하여 상업적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 TRIPs 제11조 대여권

적어도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의 저작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대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TRIPs협정상의 절차적 규정(지적재산권의 집행)

TRIPs는 제3장 제41조 내지 제61조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TRIPs에서 집행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 조약들이 이러한 집행절차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법집행제도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 (1) 일반적 의무

회원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국내 법규하에서 시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행절차는 침해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구제조치는 물론 지속적인 침해를 막는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행절차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시행절차의 남용에 대한 안전보장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더 알아두기

### □ 대여권

-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제3자가 대여하는 것을 금지
- 원래 제3자가 적법하게 권리나 복제본을 획득한 경우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음반·영상물의 상업적 대여 및 불법복제가 늘면서 대여권의 부여 필요성이 증가

## 나만의 강의 노트

(2) 민사 및 행정절차

① 증거제출 및 절차

사법당국은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으로 취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가 상대방의 관할에 있는 것을 소명한 경우,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조건하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증거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금지명령

사법당국은 일방당사자에게 침해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입상품이 통관된 직후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선의자 즉, 당해물품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라는 사실을 알기 이전 또는 알고 있었을 상당한 이유를 가지기 이전에 주문 또는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손해배상

사법당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자가 권리소유자에게 지적재산권의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배상을 하고, 권리소유자의 소송비용까지 침해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기타구제

권리침해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사법당국은 침해상품 또는 침해상품을 제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물건, 기구 등을 보상 없이 압수하고 현행 헌법조항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⑤ 정보권

사법당국이 침해의 심각성과의 균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침해자에게 침해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및 배포에 관여한 제조자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유통체계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5. TRIPs협정상의 국경조치 규정

TRIPs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고, 위조상품 유통방지의 핵심은 위조상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협정 제51-60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 일단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시장에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단속 및 압류 등에 의한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TRIPs협정에 반영함.

(1) 세관당국에 의한 통관정지

두 회원국은 권리자가 행정 또는 사법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상표권 위조상품 및 저작권 침해상품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해 세관에 의한 통관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예치금 또는 공탁금

본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정지 요청자는 세관당국에 예치금 또는 공탁금을 기탁해야 한다. 또한, 의장, 특허,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본 조치가 사법당국이나 기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관당국에 의해 내려진 경우 해당상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상품의 수탁자 등은 권리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할만한 금액을 예치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3) 통관정지기간

통관정지조치 후 10근무일 이내에 피고가 아닌 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통관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음이 세관에 통보되지 않는 한 해당상품은 통관되어야 한다.

(4)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통관정지 요청자가 잘못된 요청으로 수입업자, 상품수탁자 및 해당 상품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통관정지 요청자는 그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5) 최소 허용 수입량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된 소량상품이나 소량의 탁송상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경우에 대해서는 본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분쟁의 예방·해결 및 처벌

(1) 투명성

지적재산권의 이용가능성, 범위, 획득, 시행 및 남용방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및 행정·사법적인 결정 등은 공개·발간되어야 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제 등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에 통보해야 한다.

(2) 분쟁해결절차

TRIPs에 관련된 분쟁은 TRIPs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GATT 제22조, 제23조 및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에 의하여 처리된다.

(3) 형사절차

회원국은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와 처벌을 마련하여야 한다. 처벌은 유사한 죄질을 가진 다른 범죄와 처벌수준에 있어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구금 또는 벌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